

시전동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및 결격사유 안내

「시전동 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9조(후보자의 자격), 제10조(기탁금), 제11조(후보자 등록), 12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제1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후보자 자격 및 등록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후보자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규정 1부. 끝.

2020년 6월 10일

시전동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 3 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9조(후보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②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범위의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기탁금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유무 증명 서류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는 본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35일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

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후보자등록신청서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직업:
- 학력:
- 경력:

년 월 일 실시하는 시전동체육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시전동체육회 귀중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부(통).
3. 이력서 1부.

-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규약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후보자 정계사실 유무 확인서

| | |
|---|---|
| 시전동체육회 회장 귀하 | |
|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 |
| 성명 | |
|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 |
| 정계사실 유무 | <input type="checkbox"/> 정계사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정계사실 없음 |
| < 정계내역 > | |
| ① 정계내역 1 | |
| 정계일자 | 년 월 일 |
| 정계사유 | <input type="checkbox"/> 승부조작 <input type="checkbox"/> 편파판정 <input type="checkbox"/> 폭력 ·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횡령 <input type="checkbox"/> 배임 <input type="checkbox"/> 직권남용 <input type="checkbox"/> 직무태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정계 시 신분 및 정계종류 | <input type="checkbox"/> 선수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 | <input type="checkbox"/> 지도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 | <input type="checkbox"/> 심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강등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 | <input type="checkbox"/> 임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 | <input type="checkbox"/> 직원 ☞ <input type="checkbox"/> 파면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강등 / <input type="checkbox"/> 정직(기간:)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원 등() |
|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 ② 정계내역 2 | |
| | 이하생략 |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단체장명 (직인) | |

[별지 제7호 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1대 시전동 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시전동 체육회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시전동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후보자 사퇴 신고서

- 후보자성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소 :
- 직업 및 직위 :
- 접수번호 :
- 사퇴사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시전동 체육회 회장선거의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인)

시전동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